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혐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
료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제13-3판 개정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-6887호, 2023.5.26.)
- 나.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혐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(보험급여과-5686호, 2020.10.7.)

- 2.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, 우울,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혐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, 정신건강의학과 혐의진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혐의진찰료 산정횟수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3. 격리 권고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대 상 :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
- 내 용 : 정신건강의학과 혐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
- 적용기간 : 2020.12.1. 진료분 ~ **2023.5.31. 진료분**
* 2023.6.1. 0시부터는 기존 가-8 혐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

송서현

보건사무관

조영대

보험급여과장

전결 05/26

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540 (2023.05.26.) 접수 심사기준1부-1081 2023.05.30.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shsong98@korea.kr
전화 044-202-2737 전송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공개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